

특허침해금지명령 또는 가처분결정의 강제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 유통, 판매 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책임 여부



(1)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제집행면탈죄 혐의상황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지재산 침해분쟁

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

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

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

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되어 성립하는 재산죄입니다.

(3) 특허침해를 주장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처분 소송을 하는데, 특허침해 혐의자가 패소를 우려하여 해당 제품을 도매상 등에 유통시키면, 최종 특허침해로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강제집행면탈죄 책임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특허침해 혐의자가 제품을 반출한 행위가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제3의 회사에 진정한 의사로 판매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제고를 자회사 또는 관계사인 도매회사에 역지로 넘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4) 형식적으로 서류상 매출은 맞지만, 진정한 양도가 아닌 단지 보관 위치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양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소위 서로 짜고 잠시만 보관했다 반품한다는 정도, 즉 '허위표시에 의한 판매'도 허위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허침해 제품의 진정한 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침해금지처분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허침해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5) 또한, 판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므로, 특허침해제품이 도매회사 물류창고에 있을 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은 아니어서 특허권자에게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방어주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재권분쟁, 침해대응,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심판소송, One-Stop 대응,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